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제220202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위험표지 설치 의무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3

I.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제220202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

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25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위험표지 설치 의무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u>필요하다고 판단되는</u>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 ----- ----- -----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하로 지정된-----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요건 중 현행법 제16조¹⁾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 표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25조²⁾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³⁾가 교량, 터널 등 시설물⁴⁾ 등에 대하여 현행법 제11조부터 제13조⁵⁾까지의 안전점검등⁶⁾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⁷⁾이 있거나,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⁸⁾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⁹⁾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관계로,

현행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9)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중 D,E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설명함.

안전등급 기준인 D, E 등급에 해당되는 즉시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별도로 그 시기를 추가적으로 결정한 후 위험물 표지 설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에 관한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그 설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위험물 표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는 QR 코드 및 바코드 등과 같은 전자적 인식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 기본정보, 안전점검 일시, 안전등급 및 결함 부위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전자 정보 체계 및 기술 발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